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행정규제법 및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규정의 완화·폐지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 규정 삭제(안 제5조)
 -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 폐기물사업장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완화(안 제12조)
 - 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 규정 삭제(안 제13조)
 - 봉투판매소 지정계시판 부착 규정 삭제(안 제2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99년도 행정절차법에 의거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그 내용이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어 폐지되어야 할 내용과 규제완화 등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 가. 제5조(구민의 책무)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가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1·2항 및 제7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 나.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의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1·2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삭제
- 다.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항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항에 있으며, 제10조의 제3항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동일 내용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리하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 라.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 중 행정지시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을 지도 감독한다고 한 내용을 연 2회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이는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 제13조(과징금처분)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 바.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3항의 삭제는 판매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주민에게 행정지도로 주민이 알 수 있으며 표시판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우리 구민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 개정하려는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및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규정의 완화, 폐지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 규정 삭제(안 제5조)
- 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 라.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 마. 폐기물사업장 『연 2회이상 지도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완화(안 제12조)
-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 규정 삭제(안 제13조)
- 사. 봉투판매소 지정계시판 부착 규정 삭제(안 제20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p>제5조(구민의 책무)</p> <p>①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p>	<p>(삭 제)</p>
<p>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 사용</p> <p>2.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프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p>	<p>①(삭 제)</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3. 재활용 가능품 : [별표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p> <p>4. 대평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p> <p>5. 음식물쓰레기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997. 12. 31개정 1998. 10. 9</p> <p>6. 기타 생활계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1997. 12. 31</p>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p> <p>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법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p> <p>③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가 정하는</p>	<p>③(현행과 같음)</p> <p>①(삭 제)</p> <p>②(현행과 같음)</p> <p>③(삭 제)</p>

현행	개정
<p>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u>년 2회이상</u>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3조(과징금 처분)</p> <p>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③ 과징금의 사용은 영 제12조에 규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 수수료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금액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삭 제)</p>